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

2020년도 **특정감사** (○○○○시설 등 4개소)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 사 평 가 실

2020년도 특정감사 (○○○○시설 등 4개소) 결과 공개

▷ 2020년도 특정감사(○○○○ 시설 등 4개소) 결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결과공개

I 감사개요

- (감사목적)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수감범위) 2018. 5. 1. ~ 2020. 6. 30. 기간에 처리한 업무
- (감사기간) 2020. 7. 13.(월) ~ 2020. 8. 28.(금)
- (감사대상) ○○○○시설 등 4개소
- (감사인원) 감사평가실장 등 5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 병행)

II 감사결과

- (지적사항)

(단위 : 건, 원)

행정상건									재정상		비고
계			본처분			현지처분			환수	지급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계	시정	주의			
31	9	22	25	9	16	6	0	6	4 / 2,466		

III 공개내용

- 특정감사 결과, 본처분 25건 공개 / 현지처분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후원물품 및 비품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의 2(재물조사)에서는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른 후원금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 목차 9, 「재산과 물품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비품 “이라하면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집기 등의 유체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 물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를 준용하여 물품의 사용연한을 설정하며, 제6조에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산(비품)대장등록,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비지정후원금으로 구입한 비품 중, 비품대장 누락 및 재물조사 미 실시 현황

사 용 일 자	물 품 명	내용연수	수량	단위	구입금액 (원)	비 고
2019. 5. 8.	•해피해피테이블(6~8인용)	8	1	개	530,000	비 품 등 록 누 락 재물조사미 실시
	•카본파라솔 2300	6	1	식	131,000	
2019. 7. 12.	•솔라크랭크2700파라솔	6	2	개	172,000	

- 그런데도, ○○○○○○○○○에서는 위 표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으로 테이블과 파라솔을 구입 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비품대장에 누락 되어 있고, 2020년 정기재물조사 대상에도 누락되는 등 비지정후원금으로 구입한 비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에게 비품대장에 누락된 물품을 정리하게 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에서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될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서와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회계사무 담당 직원의 인계·인수(2회/2020. 1. 1 /2020. 7. 1)를 실시하면서,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예금잔고증명서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 현황

구 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수입취급원 지출취급원 물품출납원	2020. 1. 1	○○○	●●●	조직개편
수입취급원 지출취급원 물품출납원	2020. 7. 1	○○○	●●●	퇴사

[처분요구]

- ****과장은 ○○○○○○○○○○장에게 회계담당 직원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2018년 4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66,460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단위 : 원)

구 분	* *카드	* *BC카드	* *카드	* *BC카드	합 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68,150	12,891	34,725	150,694	266,460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266,460원을 세입조치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의록 및 관리운영규정 공개의무 미 이행

[내 용]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조직 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관련 규정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또는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개최로 작성한 회의록은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호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은 「○○○○○○○○○○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 규정에 대해 기관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한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비공개 절차 없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회의록 및 관리운영규정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계약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6절(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그러나, ○○○○○○○○○○은 아래와 같이 11건의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업명과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사유 등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수의계약 미 공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지 적 사 항
1	'18	상수도 배관 동파 긴급보수	1,980	●●●●●	'18.2.2.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2	'18	3층 재활치료실 내부 수리수선	8,000	●●●●●	'18.6.7.	"
3	'18	조명설치작업	13,970	●●●●●	'18.10.17.	"
4	'18	강당 내부 led전광판 설치작업	6,600	●●●●●	'18.10.19.	"
5	'18	연결의자 철거	4,500	●●●●●	'18.10.10.	"
6	'18	외부 PVC배관 교체 설치작업	3,787	●●●●●	'18.10.16.	"
7	'18	외부 사인물 교체작업	4,213	●●●●●	'18.10.16.	"
8	'18	LED 조명등 교체공사	10,700	●●●●●	'18.11.6.	"
9	'18	강당 빔프로젝터 설치작업	11,220	●●●●●	'18.12.18.	"
10	'18	넥산 교체 설치작업	14,000	●●●●●	'18.12.14.	"
11	'20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 승강기 법 개정 품목 설치	14780	●●●●●	'20.3.23.	수의계약내역 일부공개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계약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6.27.]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은 ‘○○○○○○○○○○○ 강당 내부수리수선 및 외벽도색 공사’ 준공 당시 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646,960원을 감액 또는 반환요구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사용내역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금액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공사명	계약자	계약일자	도급액 (수수료 정산)	집행액 (수수료 미정산)	초과 집행액	비고
2018	강당 내부수리수선 및 외벽도색 공사	●●●●	'18.9.14.	142,188,870	142,835,830	646,960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부당하게 지급한 646,960원을 회수 조치하고, 공사 정산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I 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I 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과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외에는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은 ‘○○○○○○○○○○○ 강당 내부수리수선 및 외벽도색 공사’ 외 2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시기와 공사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분할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번	연도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사업기간	비고
1	'18	○○○○○○○○○○○○강당 내부수리수선 및 외벽도색 공사	142,835,830	●●●●●	'18.9.14.	'18.10.15.~'18.11.26.	입찰
2	'18	연결의자 철거	4,500,000	●●●●●	'18.10.12.	'18.10.13.~'18.11.7.	수의
3	'18	외부 PVC배관 교체 설치작업	3,787,000	●●●●●	'18.10.16.	'18.10.20.~'18.10.27.	"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공사 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공사·물품의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및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18조(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회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 검사자 지정 및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
- 또한, 區 재무회계 규칙[시행 2017.07.07.]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수시 [별지 제 89호 서식 /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사 완료 시 소속 직원을 검사자로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자 또는 감독자는 [별지 제91호서식 /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13건의 공사 및 물품 구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조서, 물품검사(수)조서 및 준공검사(감독)조서 미 작성에 따른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일자	지 적 사 항
1	'18	상수도 배관 동파 긴급보수	1,980	●●●●	'18.2.2.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2	'18	3층 재활치료실 내부 수리수선	8,000	●●●●	'18.6.7.	"
3	'18	○○○○○○○○○○ 강당 내 부수리수선 및 외벽도색 공사	142,835	●●●●	'18.9.14.	준공검사(감독)조서 미작성
4	'18	연결의자 구입	30,600	●●●●	'18.9.16.	물품검사(수)조서 미작성
5	'18	연결의자 철거	4,500	●●●●	'18.10.10.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6	'18	조명설치작업	13,970	●●●●	'18.10.17.	"
7	'18	강당 내부 led전광판 설치작업	6,600	●●●●	'18.10.19.	"
8	'18	외부 PVC배관 교체 설치작업	3,787	●●●●	'18.10.16.	"
9	'18	외부 사인물 교체작업	4,213	●●●●	'18.10.16.	"
10	'18	LED 조명등 교체공사	10,700	●●●●	'18.11.6.	"
11	'18	강당 빔프로젝터 설치작업	11,220	●●●●	'18.12.18.	"
12	'18	넥산 교체 설치작업	14,000	●●●●	'18.12.14.	"
13	'20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 승강기 법 개정 품목 설치	14,780	●●●●	'20.3.23.	"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계약 지출절차 업무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비지정 후원금 사용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후원금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의 사용금지),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규정에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 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2018.11.23. 자원봉사자 및 종사자 시상식 꽃다발 구입비 60,000원, 2019. 7. 3. ○○○○○○○○○○ 이·취임식 축하 꽃다발 구입비 30,000원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비지정 후원금 사용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연간계약 용역비 지출에 관한 사항

[내용]

- 「지방회계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연간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무기기 임대에 대한 용역비 지출시 정당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에서는 “●●●●●”와 2019년 ●●●●●●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표1] 현황과 같이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월정액을 균등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표2] 현황과 같이 2019년 2월에 연간 유지보수비 1,320,000원을 선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9~2020년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임대에 대해 [표1] 현황과 같이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정액을 균등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표2] 현황과 같이 2019년 2~12월 임대수수료를 11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하나, 3회로 지급하였고, 2020년 2~4월 임대 수수료를 3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하나 1회로 지급하였음.

[표1] 연간 용역비 계약 현황

(단위 : 원)

구분	용역명	연간지급금액	계약업체	지급시기
2019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20,000	●●●●●●	매월
2019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임대	1,716,000	●●●●●●	매월
2020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임대	1,716,000	●●●●●●	매월

[표2] 연간 용역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용역명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부적정지급내역
	계			3,322,000	
2019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9. 2. 8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20,000	선지급
2019	사무기기 임대수수료	19. 4. 16	2~4월 사무기기 임대수수료	429,000	3개월분 지급
		19. 6. 19	5~6월 사무기기 임대수수료	286,000	2개월분 지급
		19. 12. 3	7~12월 사무기기 임대수수료	858,000	6개월분 지급
2020	사무기기 임대수수료	20. 4. 28	2~4월 사무기기 임대수수료	429,000	3개월분 지급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연간계약 용역비 지출에 관한 업무 시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실시해야 하는 최종 하자검사 2건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 적 사 항
'18	○○○○○○○○○○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	21,857	●●●●●●●●	'18.6.11.~'20.6.10.	최종하자검사 미실시
'18	○○○○○○○○○○ 장애인화장실 개선공사(전기)	3,550	●●●●●●●●	'18.6.13.~'19.6.12.	"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공사·용역의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및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18조(사업의 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회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용역 추진 시, 소속 직원이 이를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용역 추진 시,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용역)감독조서 미 작성에 따른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감독조서 미 작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자	공사·용역 기 간	지 적 사 항
1	'18	○○○○○○○○○○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21,857	●●●●●	'18.5.23.~'18.6.11.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2	'18	○○○○○○○○○○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전기)	3,550	●●●●●	'18.5.23.~'18.6.12.	"
3	'19	○○○○○○○○○○ 스프링 클러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	6,600	●●●●●	'19.4.23.~'19.5.21.	용역감독조서 미작성
4	'19	○○○○○○○○○○ 간이스 프링클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200	●●●●●	'19.7.15.~'19.9.3.	"

[처분요구]

- ****과장은 ○○○○○○○○○ 장이 계약 지출절차 업무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르면 지출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2018년 회계업무 처리 시, 지출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지출원 위임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2018.1.3. ~ 2018.12.31. 기간으로 정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없음

[제목]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내용]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따르면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전문적인 강사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표1] 현황과 같이 전문적인 강사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 강사료 총 19,993,23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659,780원(소득세 599,800원, 지방소득세 59,98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프로그램별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강사명	총지급액	소득세공제액			정상지급액	비고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9,993,230	659,780	599,800	59,980	19,333,450	
2018	근력운동	●●●	1,635,000	53,950	49,050	4,900	1,581,050	미공제
	라인댄스	●●●	1,075,000	35,480	32,250	3,230	1,039,520	미공제
	한글교실	●●●	900,000	29,700	27,000	2,700	870,300	미공제
	한글교실	●●●	780,000	25,740	23,400	2,340	754,260	미공제
	오감복 스토리	●●●	240,000	7,920	7,200	720	232,080	미공제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	60,000	1,980	1,800	180	58,020	미공제
	그림책 테라피	●●●	200,000	6,600	6,000	600	193,400	미공제
	신나는 브레이닝	●●●	320,000	10,560	9,600	960	309,440	미공제
	***마음 정비소	●●●	480,000	15,840	14,400	1,440	464,160	미공제
	요리하는남자	●●●	1,000,000	33,000	30,000	3,000	967,000	미공제
2019	근력운동	●●●	1,080,000	35,640	32,400	3,240	1,044,360	미공제
	라인댄스	●●●	1,230,000	40,590	36,900	3,690	1,189,410	미공제
	필라테스	●●●	570,000	18,810	17,100	1,710	551,190	미공제
	한글교실	●●●	360,000	11,880	10,800	1,080	348,120	미공제
	한글교실	●●●	1,080,000	35,640	32,400	3,240	1,044,360	미공제
	힐링맘·행복맘	●●●	500,000	16,500	15,000	1,500	483,500	미공제
	오감복스토리	●●●	960,000	31,680	28,800	2,880	928,320	미공제
	***마음 정비소	●●●	1,200,000	39,600	36,000	3,600	1,160,400	미공제
	그림책테라피	●●●	1,440,000	47,520	43,200	4,320	1,392,480	미공제
	요리하는남자	●●●	1,000,000	33,000	30,000	3,000	967,000	미공제
	집단상담	●●●	1,440,000	47,520	43,200	4,320	1,392,480	미공제
	쓰담쓰담	●●●	880,000	29,040	26,400	2,640	850,960	미공제
2020	맑은교실	●●●	100,000	3,300	3,000	300	96,700	미공제
	맑은교실	●●●	103,230	3,410	3,100	310	99,820	미공제
	맑은교실	●●●	100,000	3,300	3,000	300	96,700	미공제

구분	프로그램명	강사명	총지급액	소득세공제액			정상 지급액	비고
				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어르신요가	●●●	120,000	3,960	3,600	360	116,040	미공제
	라인댄스	●●●	150,000	4,950	4,500	450	145,050	미공제
	필라테스	●●●	330,000	10,890	9,900	990	319,110	미공제
	한글교실	●●●	120,000	3,960	3,600	360	116,040	미공제
	한글교실	●●●	300,000	9,900	9,000	900	290,100	미공제
	그림책테라피	●●●	240,000	7,920	7,200	720	232,080	미공제

[처분요구]

- ****과장은 ○○○○○○○○○○○장에게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659,780원을 회수·신고하고, 원천징수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없음

[제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내용]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기본요건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등으로 규정 되어 있음.
- 가족수당 지급 소멸시기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연령초과, 이혼,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 직원의 둘째자녀 * * *(생년월일 1999.08.**.)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소멸시기 도래(2018년 8월) 이후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2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부당 지급한 240,000원을 회수하고, 가족수당 지급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공사·용역의 계약 및 세출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타당한 사유를 검토 후 행하여야 하며,
-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 2층 환경개선 공사’ 당시 설계변경의 타당한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설계변경 없이 준공서류에 설계변경 내역서를 첨부하여 준공처리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금액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준공금액 (설계변경 x)	공사기간	비고
2018	○○○○○○○○○ 환경개선공사	●●●●	'18.11.14.	108,378,188	116,711,581	'18.11.15. ~ '18.12.18.	

[처분요구]

- ****과장은 ○○○○○○○○○ 장이 공사 설계변경 업무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 / 신분상 :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에 관한 사항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사용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제2호나목에 따르면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표지판, 현장경계펜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사항임.
-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 환경개선 공사’ 준공 당시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 안내·경고 및 외부인 출입 금지 목적(현장경계펜스)으로 펜스를 구매·사용(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펜스를 사용한 정황이나 증빙서류 없음) 하였으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19,797원을 감액 또는 반환요구 하지 않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공사금액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 도	사 업 명	계약자	계약일자	준 공 액 (정산)	집 행 액 (미 정산)	초 과 집행액	비고
2018	○○○○○○ 환경개선공사	●●●●●	'18.11.14.	115,791,784	116,711,581	919,797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부당 지급한 919,797원을 회수하고, 공사 정산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관리운영규정 및 회의록 공개의무 미 이행

[내 용]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조직 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관련 규정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또는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회의개최로 작성한 회의록은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기관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한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비공개 결정 없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관리운영규정 및 회의록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 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에서는 [표1]과 같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현황

연번	지정기간	회계관직	성명	직위	비고
1	2018.09.01. ~ 2019.02.28	수입원	●●●	○○○ * 장	
		지출원	●●●	○○○ * 장	
2	2019.03.01. ~ 2019.11.20	수입원	●●●	○○○ * 장	
		지출원	●●●	○○○ * 장	
3	2019.11.20. ~ 2020.03.01.	수입원	●●●	○○○ * 장	
		지출원	●●●	○○○ * 장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내 용]

- 「2020년도 ○○○○○○○○○○ 관리운영지침」 예산관리 규정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 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서는 수탁자는 운영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2항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1 규정에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서 축의·부의금 집행 한도액을 1건당 5만원이하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분 또는 화환으로 할 경우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기타운영비 항목에서 2019. 12. 24. *** 직원 자녀 결혼식 경조사비로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목]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내용]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및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표1]과 같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에 대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없이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표] 회계관직 지정 현황

연번	지정기간	회계관직	성명	직위
1	2018. 05. 01 ~ 2019. 07. 31	수입원	●●●	○○○ * 장
		지출원	●●●	○○○ * 자
2	2019. 08. 01 ~ 2020. 현재	수입원	●●●	○○○ * 자
		지출원	●●●	○○○ * 장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 관 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없음 / 신분상 : 없음

[제 목]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9년 보조금, 자부담 계좌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감사일 현재까지 64,240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단위 : 원)

구 분	* * * BC	* *BC카드	합 계	비 고
보조금, 자부담	60,750	3,490	64,240	

[처분요구]

- ****과장은 ○○○○○○○○○○ 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64,240원을 세입조치하고, 해당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 ○○○○○○○○○○

[처분 요구]

○ 행정상: 주의 / 재정상: 없음 / 신분상: 없음

[제목]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지출절차에 관한 사항

[내용]

- 「○○○○○○○○○○○○○○○○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법규 이행 등)에 따라 ○○○○○○○○○○○○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하고, 같은 규칙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의 보증)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내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5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약속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용역 추진 시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있어 각 계약 내용에 맞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 약속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약속서, 수의계약 각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공사·용역 완료 후 감독조서를 미 작성함에 따라 계약 및 지출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표]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지출일자	지적사항	비고
'18	○○○○○ 누수방수공사	2,563	● ● ● ●	05.29.	계약 서류 미징구,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탱크 및 계단 공사	3,000	● ● ● ●	07.11.	"	
'19	소방시설 공사	1,920	● ● ● ●	04.09.	"	
	오수정화조 청소	1,164	● ● ● ●	10.05.	계약 서류 미징구, 용역감독조서 미작성	
'20	*** 청관제 외1종 구입	1,785	● ● ● ●	01.16.	계약서류 미징구	
	소방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공사	1,460	● ● ● ●	02.25.	계약 서류 미징구, 공사감독조서 미작성	
	○○○○○ 교체	1,650	● ● ● ●	02.26.	"	
	계단 데스리보수 및 옥상환풍기보수	1,800	● ● ● ●	05.28.	"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표]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지출일자	지 적 사 항	비고
'18	○○○○○○○○○○ 누수방수공사	2,563	● ● ● ●	05.29.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탱크 및 계단 공사	3,000	● ● ● ●	07.11.	"	
'19	소방시설 공사	1,920	● ● ● ●	04.09.	"	
	오수정화조 청소	1,164	● ● ● ●	10.05.	"	
'20	*** 청관제 외1종 구입	1,785	● ● ● ●	01.16.	"	
	소방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공사	1,460	● ● ● ●	02.25.	"	
	○○○○○ 교체	1,650	● ● ● ●	02.26.	"	
	계단 데스리보수 및 옥상환풍기보수	1,800	● ● ● ●	05.28.	"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계약과정 공개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아래와 같이 6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 하자검사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약 자	지출일자	지 적 사 항	비고
'18	○○○○○○○○○○누수방수공사	2,563	●●●●	05.29.	하자검사 미실시	
	○○○○ 및 계단 공사	3,000	●●●●	07.11.	"	
'19	소방시설 공사	1,920	●●●●	04.09.	"	
'20	소방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공사	1,460	●●●●	02.25.	"	
	○○○○○ 교체	1,650	●●●●	02.26.	"	
	계단 데스리보수 및 옥상 환풍기보수	1,800	●●●●	05.28.	"	

[처분요구]

- ****과장은 ○○○○○○○○○장이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